

「식품위생법」 위반(동석작배)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(영업자 등의 준수사항) 위반으로 아래의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1조(시정명령)에 따라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명령서를 교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(송달)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년 9월 28일

파 주 시



- 제 목: 「식품위생법」 위반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9. 28. ~ 2026. 10. 13.
- 법적근거: 「식품위생법」 제44조 및 같은 법 제71조
- 공고대상 및 처분내역

업소명 (업 종)	대표자	소재지	처분사유	처분할 내용
야간포차 (일반음식점)	장여은	파주시 금정14길 36	영업자가 손님의 유흥을 돈우는 행위를 함(동석작배)	시정명령

5. 고지사항

- 처분된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 「행정소송법」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,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.

- 문의사항: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(☎ 031-940-8511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